#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04

발의연월일: 2025. 1. 7

발 의 자:신장식·김선민·차규근

황운하 · 정춘생 · 백선희

김준형 • 이해민 • 서왕진

강경숙 의원(10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특정직, 일 반직을 포함하여 정원이 750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. 대통령경호처는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라 대 통령비서실,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바이는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있음. 대통령 경호조 직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 경무대경찰서 담당으로 출발하여 제 2공화국까지 경찰이 경호업무를 맡았음.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되었고, 1963년 5·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경호실을 창설한 바 있음. 군사정권 시절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친위대로 기능하였음.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 으로 불리던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법이 정한 경호 업무의 범위를 넘 어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보위기구와 유사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기구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형편임. 한편, 해외 주요국가들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대 부분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음. 우리나라도 대통령 외에 주요 국가요 인에 대한 경호는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음.

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 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 나아가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를 일원 화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 하고자 함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부조직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제730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경호의 조직·직무범위"를 "경호의 직무범위"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경호 대상자"를 "경호 대상자(이하 "경호대상"이라고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"를 "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경호처가"를 "경찰청이"로 한다.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직무) ① 경찰청은 이 법에 따른 경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- ② 경찰청은 이 법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국을 둔다.
- ③ 경찰청이 법에 따른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"을 "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"으로 한다.

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.

6.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(要人)

제5조제1항 중 "처장은"을 "경찰청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한정되어야 한다"를 "한정되어야 하며 경호 목적이 해소되는 즉시 해제하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"을 "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"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"대통령"을 "국무총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·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5조 중 "처장은 직무상"을 "경찰청장은 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"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"(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)"를 "(경호안전대책위원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"를 "국무총리 소속으로 경호안전대책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"대통령"을 각각 "대통령등"으로 한다.

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찰청장이 승계한다.
  -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(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)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"대통령경 호처"를 인용한 경우에는 "경찰청"을, "대통령경호처장"을 인용한 경우는 "경찰청장"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통령 등에	제1조(목적)
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	
하기 위하여 <u>경호의 조직·직</u>	<u></u> 경호의 직무범위-
<u>무범위</u>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	
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경호"란 <u>경호 대상자</u> 의 생	1 <u>경호 대상자(이</u>
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	하 "경호대상"이라고 한다)
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(危	
害)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,	
특정 지역을 경계·순찰 및	
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	
동을 말한다.	
2. "경호구역"이란 <u>소속공무원</u>	2 <u>경호활동</u>
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	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
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	<u>다</u> .
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	
<u>을 말한다</u> .	
3. "소속공무원"이란 대통령경	<u>&lt;</u> 삭 제>
호처(이하 "경호처"라 한다)	
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	

을 말한다.

- 4. "관계기관"이란 경호처가 경 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.
- 제3조(대통령경호처장 등) ① 대|제3조(직무) ① 경찰청은 이 법에 통령경호처장(이하 "처장"이라 한다)은 대통령이 임명하고, 경 한다. 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 - ②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. |
  - ③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 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 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, 처장을 보좌한다.
- 제4조(경호대상) ① 경호처의 경 호대상은 다음과 같다.
  - 1. ~ 5. (생 략)
  - 6.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(要人)
  - ② (생략)
  -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

4.	 	 <u>경찰</u>	<u>청이</u> -
-	 	 	
-	 	 	
-	 	 	
_	 · <b>.</b>		

- 따른 경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
- ② 경찰청은 이 법에 따른 경 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 호국을 둔다.
- ③ 경찰청이 법에 따른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에 파 견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4조(경호대상) ①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.
  - 1. ~ 5. (현행과 같음)
  - 6.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(要人)
  - ② (현행과 같음)
  - -----고령 등의 사유

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 할 수 있다.

제5조(경호구역의 지정 등) ① <u>처</u> <u>장은</u>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 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<u>한정되어야</u> 한다.
-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 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 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 에서 질서유지, 교통관리, 검문 ·검색, 출입통제,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 다.

제5조의2(다자간 정상회의의 경 호 및 안전관리) ① 대한민국 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

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·.
제5조(경호구역의 지정 등) ① <u>경</u>
찰청장은
②
한정되어야
하며 경호 목적이 해소되는 즉
<u>시 해제해야 한다</u> .
③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<u>\bar{b}</u>
제5조의2(다자간 정상회의의 경
호 및 안전관리) ①

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 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(身邊)보호 및 행사 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대통령</u> 소 속으로 경호·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.

- ② 경호·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.
- ③ 경호·안전 대책기구는 소 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 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(생 략)
- ⑤ 경호·안전 대책기구의 장 < 삭 제>
  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
 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
 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
 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13호에
 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
 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
  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
 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
  할 수 있다.
- 제6조(직원)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 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

<u>국무총리</u>
<u>.</u>
<u>&lt;삭 제&gt;</u>

<u><삭 제></u>

④ (현행과 같음)<삭 제>

공무원을 둔다. 다만,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 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 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 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 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제7조(임용권자) ① 5급 이상 경 <삭 제> 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 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. 다 만. 전보·휴직·겸임·파견· 직위해제·정직(停職) 및 복직 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. 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 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.

③ 삭제

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 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 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 의6제3항을 준용한다.

제8조(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)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

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 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 용될 수 없다.
- 1.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③ 제2항 각 호(「국가공무원 법」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)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은 당연히 퇴직한다.

제9조(비밀의 엄수) ① 소속공무 〈삭 제〉 원[퇴직한 사람과 원(原)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은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.

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 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 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 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0조(직권면직) ① 임용권자는 〈삭 제〉

직원(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있다.

- 1. 신체적・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
- 2.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
- 3. 직제와 정원의 개페(改廢)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 여 폐직(廢職) 또는 과원(過 員)이 된 때
- 4.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 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 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
- 5.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 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

- 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- 6.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- ② 제1항제2호·제5호에 해당 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 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 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, 업 무실적, 직무 수행 능력, 징계 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 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야 한다.

제11조(정년) ① 경호공무원의 정

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연령정년

가. 5급 이상: 58세

나. 6급 이하: 55세

2. 계급정년

가. 2급: 4년

나. 3급: 7년

다. 4급: 12년

라. 5급: 16년

② 경호공무원이 강임(降任)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 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 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 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. ③ 정계로 인하여 강등(6급으 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 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. 다만, 1급 경호공무원 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 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 다.

- 2.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 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 를 합산한다.
- 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제12조(징계)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 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.

-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. 다만,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한다.
-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으로 정한다.

제13조(보상) 직원으로서 제4조제 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 하여 상이(傷痍)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(상이 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 한다)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보상을 한다.

제14조(「국가공무원법」과의 관 계 등) ① 직원의 신규채용, 시 험의 실시, 승진, 근무성적평정,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「국가공무원법」을 준용한다.
- ③ 직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 무원법 |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제15조(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제15조(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

요청) <u>처장은 직무상</u> 필요하다	요청) <u>경찰청장은 경호를 수행</u>
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, 지	<u>하기 위하여</u>
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	
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	
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	
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
제16조(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	제16조(경호안전대책위원회) ① -
<u>회)</u>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	
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	
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	
을 명확하게 하고, 협조를 원활	
하게 하기 위하여 <u>경호처에 대</u>	국무총리 소속으로 경
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(이하	호안전대책위원회
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, 부위	<u>&lt;</u> 삭 제>
원장은 차장이 되며, 위원은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	
공무원이 된다.	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	4
항을 관장한다.	
1. <u>대통령</u> 경호에 필요한 안전	1. <u>대통령 등</u>
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	
2. <u>대통령</u> 경호와 관련된 첩보	2. <u>대통령 등</u>

•정보의 교환 및 분석

- 3. (생략)
- ⑤ (생략)
- 제17조(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)
  - ① 경호공무원(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(司法警察官吏)의 직무를수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 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 를 수행하고, 8급 이하 경호공 무원은 사법경찰리(司法警察吏) 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18조(직권 남용 금지 등) ① 소 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.
  -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 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 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.

3. (현행과 같음)⑤ (현행과 같음)<삭 제>

제19조(무기의 휴대 및 사용) ① | <삭 제>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 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 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 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 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 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.
- 1. 「형법」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 난에 해당할 때
- 2.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 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 죄로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 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

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 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 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 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

3.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 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 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 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 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

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 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(손실보상) ① 처장은 소속 | <삭 제>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 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- 1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(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)
- 2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 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 하여 입은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
-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,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 멸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를 둔다.

-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.
-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 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 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 수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벌칙) ① 제9조제1항, 제1 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정역·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